

가) 예고기간: 2023. 4. 10. ~ 2023. 5. 1.(21일간)

나) 예고결과: 해당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5. 본문: 붙임과 같음.

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□ 조례 제정의 취지(필요성)

- 「청소년 기본법」에 따른 청소년시설인 고성군청소년센터 “온”, 고성동부 청소년센터, 고성하이청소년센터 세 곳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.

□ 주요 내용 검토

- 목적, 정의, 명칭 및 위치, 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4조)
 - 조례 제정의 목적 제시
 - 청소년, 청소년시설, 청소년수련시설, 청소년이용시설, 청소년단체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관련 법에 기반하여 정의함.
 -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1로 제시
 - 시설별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
- 운영 및 위탁, 운영시간과 휴관일(안 제5조~제6조)
 - 시설 운영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.
 - 운영시간과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.
- 사용대상, 사용신청, 사용제한, 사용취소 및 중지(안 제7조~제10조)
 - 일반인의 사용신청이 가능하게 하여 시설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함.
 - 사용신청 필요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, 사용 제한과 사용취소 및 중지에 관한 예를 명시

○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, 반환(안 제11조~13조)

- 사용료를 별표2로 제시하고, 징수와 사용료 감면 대상을 명시함.
- 사용료 반환을 시설 사정, 불가항력적인 사유, 사용자 신청으로 구분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함.

○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.

□ 종합의견

- 청소년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 운영을 위해 시설별로 제정된 개별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임.
-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과 군민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8. 토 론 : 없음.

9. 심사결과 : 2023. 6. 2. 원안가결